「2024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시험대비」

형사법 난이도별 모의고사 및 풀이(2)

※ QR코드를 통해 "형사법의 끝판왕" 형사법 오상훈 교수의 강의 일정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상훈 교수 | 박문각 경찰 노량진학원

[출제영역 : 범죄론]

12. 죄수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하지만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같은 종류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

㉢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라도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므로 의료법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② 난이도 : 중

㉠ (O) **[인터넷파일공유 웹스토리지사건]** 대판 2012.5.10, 2011도12131

㉡ (X)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비록 그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기 어려워 그 전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대판 2008.12.11, 2008도6987).

㉢ (O) 대판 2018.11.29, 2018도10779

㉣ (X) 의료기관의 개설자 명의는 의료기관을 특정하고 동일성을 식별하는 데에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므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범의가 단일하다거나 범행방법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8.11.29, 2018도10779).

[출제영역 : 형벌론]

13. 몰수 ·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②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③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면, 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받은 50,000,000원을 형법 제48조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④ 「형법」 제134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경우 뇌물에 공할 금품이 특정되지 않았던 것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정답 : ③ 난이도 : 중

① (O) 대판 1992.7.28, 92도700 ∵ **면소판결**을 하는 경우이므로

② (O) 대판 2021.10.14, 2021도7168

③ (X)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범죄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를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한 사안에서, 위 **웹사이트**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무형의 재산**에 해당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이 규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위 웹사이트 매각대금을 추징한 원심판결에 형법 제48조에서 정한 몰수 ·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21.10.14, 2021도7168).

④ (O) 대판 1996.5.8, 96도221

[출제영역 : 형벌론]

14.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경우

㉣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경우

㉤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① ㉠㉢ ② ㉡㉤
③ ㉠㉡㉣ ④ ㉡㉣㉤

정답 : ③ 난이도 : 중

※ 형의 임의적 감면 : ㉠ 과잉방위(제21조 제2항), ㉡ 불능미수(제27조), ㉣ 자수(제52조 제1항)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필요적 산입(제7조)**

㉤ 중지미수: 형의 필요적 감면(제26조).

[출제영역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며 甲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였고, 甲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자 乙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하였다면, 甲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② 甲은 7세, 3세 남짓의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에 따라 들어오게 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甲에게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하지 않은 생모를 살해하면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④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임산부의 상태변화, 의료진의 처치경과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의학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정답 : ④ 난이도 : 하

① (O) 대판 2010.4.29, 2010도2328

② (O) 대판 1987.1.20, 86도2395

③ (O)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자의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이다(대판 1980.9.9, 80도1731). □ 보통살인 X, 존속살해 O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부**의 경우 인지절차를 거쳐야만 법률상 직계존속이 되므로, 인지하기 전에 생부를 살해하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④ (X) **[제왕절개사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始期)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3832).

[출제영역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6. 협박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③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는 자연인만을 말하고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정보보안과 소속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면서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 빨리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한 경우,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 ③ 난이도 : 하

① (O) 대판 1986.7.22, 86도1140

② (O)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형법규정의 체계상 개인적 법익, 특히 사람의 자유에 대한 죄 중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협박죄의 보호법익, 형법규정상 체계, 협박의 행위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③ (X) **[상무이사협박사건]** 대판 2010.7.15, 2010도1017

④ (O) **[정보과소속경찰관협박사건]** 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고시기획 NEWS